

파주시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10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1997. 9.

제 출 자 : 파주시장

1. 제안이유

- 지역여건 및 특성에 맞는 경영수익사업인 완전혼합사료제조시설을 민관 공동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위하여
-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에 맞게 일부조항 및 구체적인 사업기준등을 명시하여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제1조 및 제2조중 「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제1항」을 「제2조제3항 내지제5항으로함」
- (별표)중 「사료제조사업,5인이상,자본금3억원이상」을 신설함

파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파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및 제2조중 “제2조제1항”을 “제2조제3항내지 제5항”으로 한다.

(별표)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중 지역개발기금사업란 다음에
사료제조 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구 분	기 준	
	직 원 수	사 업 규 모
사료제조사업	5인이상	자본금3억원이상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	개정이유																			
제1조(목적)이 조례는 지방 공기업법 (이하 「법」이라 한다)제2조 및 동법 시행령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 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사업규모 및 기준)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 할 수 있는		제1조 (목적) ----- ----- -----제3항내지 제5항 ----- ----- ----- ----- 제2조(사업규모 및 기준) ----- -----제3항내지 제5항 ----- -----			경영수의 사업인 완전혼합 사료 제조 시설을 민관공동 투자사업으로 추진 하기위함																			
(별표)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r> <th rowspan="2">구 분 사업명</th> <th colspan="2">기 준</th> </tr> <tr> <th>직원수</th> <th>사업규모</th> </tr> <tr> <td>(신설)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		구 분 사업명	기 준		직원수	사업규모	(신설)			<table border="1"> <tr> <th rowspan="2">구 분 사업명</th> <th colspan="2">기 준</th> </tr> <tr> <th>직원수</th> <th>사업규모</th> </tr> <tr> <td>사료제조</td> <td>5인</td> <td>자본금3억원</td> </tr> <tr> <td>사 업</td> <td>이상</td> <td>이상</td> </tr> </table>			구 분 사업명	기 준		직원수	사업규모	사료제조	5인	자본금3억원	사 업	이상	이상	
구 분 사업명	기 준																							
	직원수	사업규모																						
(신설)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 사업명	기 준																							
	직원수	사업규모																						
사료제조	5인	자본금3억원																						
사 업	이상	이상																						